

재중한인과학기술자협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협회는 재중한인과학기술자협회(약칭:재중과협)라고 한다. 영문명칭은 The Korean Scientists and Engineers Association in China (약칭:KSEACH)로 한다.

제2조 소재지

본 협회의 소재지는 회장의 거주지역에 두며, 그 주소는 회장단의 구성에 따라 정해진다.

제3조 목적

본 협회는 중국에 거주하는 한인 과학·기술자들의 연구활동 및 상호유대를 강화하고 한국과 중국의 과학기술분야 교류를 통하여 동북아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기본활동

본 협회는 제3조에 명시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수행한다.

1. 회원을 중심으로 한 학술 활동 및 기술교류의 지원
2. 한국, 중국 및 제3국의 과학기술자와 학술정보교환 및 상호 협력 강화
3. 한국의 과학기술자 및 차세대 인재의 양성 및 유치사업에 대한 협력
4. 재중 젊은 과학기술자 및 재중 한국인의 차세대 교육에 대한 지원
5. 기타 본 협회 목적에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추진

제5조 사업연도

본 협회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장 회원

제6조 회원 자격 및 구분

본 협회 회원은 중국 및 그 주변국가에 거주하는 한인 및 해당국 국민 또는 단체로서 그 구분과 자격은 다음과 같다. 단, 주변국가란 해당국가에 본 협회와 동일한 성격의 단체가 존속하지 않는 국가를 의미한다.

1. 정회원: 과학기술분야의 대학원 박사과정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자, 과학기술분야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준회원 단체회원 특별회원 중 평의원회에서 추천된 자,
2. 준회원: 과학기술분야 석사과정이상인 자, 또는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3. 단체회원: 과학기술분야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업체로서 본 협회의 목적 및 기본 활동에 동참하는 단체
4. 특별회원: 과학기술발전에 공적이 큰 사람 또는 본 협회의 목적달성에 공헌이 큰 사람으로 평의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5. 명예회원: 본 협회 회원이었으나 귀국 등의 사유로 현재 중국에 거주하지 않는 자

제7조 회원의 자격취득

회원의 자격 취득은 소정의 입회원서 제출과 회장의 승인에 의한다.

제8조 회원의 자격상실

회원의 자격은 제명, 탈퇴 및 사망의 경우 상실된다. 탈퇴는 본인이 회장에게 탈퇴원을 제출함으로써 성립된다.

제9조 회원의 권한

1. 회원은 협회의 목적과 기본활동에 준하는 사업 및 행사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2. 정회원은 회장 및 감사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10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며 협회활동에 협조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
2.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단, 명예회원은 예외로 한다

제11조 회원의 제명

협회 회원이 회칙을 위반하고 본 협회 활동을 방해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동을 하였을 때 총회는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이를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2조 임원의 구성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2명, 이사 6명 이내(총무, 재무, 학술, 홍보 등), 지부장 3명으로 한다

제13조 임원의 선출

1.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
2. 회장은 부회장 및 이사를 임명하고 사업연도 시작 전에 전 회원에게 통보한다.
3. 지부는 수도권 지부, 동북권 지부, 서남권 지부를 두며, 각 지부장은 각 지부회에서 선출한다. 각 회원은 각자의 희망에 따라 소속 지부를 택할 수 있다.
4. 회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이사를 둘 수 있다

제 14 조 임원의 임기 및 연임 규정

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경우, 제13조 임원의 선출 방법에 따라 보선을 한다. 단,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임원을 새로 선출하지 않는다.

제15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솔하고 총회, 평의원회, 임원회의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이사들의 업무를 조정하고 지휘한다. 회장 유고 시 업무를 대행한다.
3. 총무는 본 협회의 모든 회의록 및 업무사항을 기록·보존하며 회장, 부회장을 보좌하여 본 협회의 모든 사업 추진을 총괄한다.
4. 이사는 소속 직책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수행한다
5. 지부회는 지역단위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지부장은 소속지부를 대표한다.
6. 감사는 예산의 집행과 결산을 감사하고 총회에서 해당년도 회계감사 결과를 보고한다. 감사는 평의원회나 임원회의에 소속되지 않는다.

제4장 회의

제16조 총회

총회는 본 협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된다.

1. 구성

- ① 총회는 본 협회 모든 회원으로 구성된다.

2. 소집

-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소집한다.
- ② 임시총회는 정회원 1/10 이상, 또는 평의원회나 임원회의에서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 ③ 총회는 개최일 4주 전 의제를 명시하여 회장명의로 공고한다.

3. 회의 성립 및 의결

- ① 총회는 재적회원 1/10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된다. 단, 총회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회장은 8주 안에 일회에 한하여 재소집 한다.
- ② 총회의 의결은 본 회칙에 특별히 명시되지 않는 한 참석인원 ½ 이상의 찬성에 의한다. 단,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정회원에게 제한한다.
- ③ 총회에서의 선거는 투표에 의한다. 필요 시 우편이나 전자 투표도 가능하다.

4. 기능

- ① 평의원회 경과보고 심의
- ② 임원회의의 사업보고 심의
- ③ 회계연도의 감사보고 심의
- ④ 차기 회장 및 감사의 선출
- ⑤ 평의원회에서의 정회원 대표 선출
- ⑥ 회원의 권익 및 제명에 관한 사항
- ⑦ 회칙 개정안의 승인
- ⑧ 기타 총회에 상정된 안건에 관한 의결

제17조 평의원회

평의원회는 총회를 대리하는 의결기관이다.

1. 구성

- ① 평의원회는 임원회의의 구성원과 6내지 10명의 정회원 대표로 구성한다. 단 정회원 대표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소집

- ① 평의원회는 회장 또는 재적평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3. 회의 성립 및 의결

- ① 평의원회는 재적 평의원 ½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된다.
- ② 평의원회의 의결은 회칙에 특별히 명시되지 않는 한 참석인원 ½ 이상의 찬성에 의한다.

③ 회의는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4. 기능

- ① 회칙 개정안의 심의
- ② 사업 및 예산안 인준
- ③ 정회원이나 특별회원의 추천
- ④ 전문분과 및 특별위원회의 신설 및 해산
- ⑤ 회원의 권익 및 제명 의결
- ⑥ 회비의 책정
- ⑦ 총회에 제출하여 인준을 요하는 사항
- ⑧ 기타 평의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18조 임원회의

임원회의는 협회의 집행기관이다.

1. 구성

- ① 임원회의는 회장, 부회장, 이사 및 지부장으로 구성된다

2. 소집

임원회의는 매년 상, 하반기 예산 편성 및 결산 심의를 비롯한 본 협회의 운영상 필요 시 수시로 소집한다.

3. 회의 성립 및 의결

- ① 임원회의는 재적임원의 2/3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된다.
- ② 임원회의의 의결은 회칙에 특별히 명시되지 않는 한 참석인원 ½ 이상의 찬성에 의한다
- ③ 회의는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4. 기능

- ① 협회의 사업계획 및 집행
- ② 매년 상, 하반기 예산 및 결산심의
- ③ 총회나 평의원회에 제출하여 인준을 요하는 사항
- ④ 기타 임원회의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5장 재정 및 회계

제19조 재정

본 협회의 재정은 다음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 1. 회원의 회비
- 2. 기부금 및 찬조금
- 3. 사업에 수반하는 수입 및 지원금
- 4. 기타 수입

제20조 예산 편성 및 승인

예산 편성은 임원회의에서 담당하고 총무이사는 예산안을 임원회의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은 후 평의원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며 승인된 예산안은 총회 시 전 회원에게 공지한다

제21조 지출 및 결산

예산 지출은 회계이사가 담당하며 그 결산은 상·하반기로 2차에 걸쳐 임원회의에 보고하고 총회 시 감사의 감사의견을 첨부하여 전 회원에게 공지한다.

제22조 회계연도

본 협회의 회계연도는 사업연도와 같다(제1장 제5조).

제6장 기타

제23조 회칙개정

회칙의 개정은 평의원회에서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그 개정안을 확정하고 총회에서 출석인원 ½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부칙>

1. (정관의 개정)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기타 사항은 일반 관례를 따른다.
2. (정관의 효력) 본 정관은 총회의 승인을 거친 날로부터 유효하다.